
공 고

제목: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일시 : 2024. 4. 30. 오전 09:30
-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아셈타워 25층, 당사 회의실
- 안건 :
 - 정관 변경의 건
(별첨 '정관 개정안' 참조)

2024. 4. 15.

주식회사 에스엘인베스트먼트

대표이사 이 승 현 (직인생략)

[정관 신규 대비표]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
<p>제1조 (상호)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스엘 인베스트먼트라 한다. 영문으로는 SL investment <u>co.</u>, Ltd.라 한다.</p>	<p>제1조 (상호)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에스엘 인베스트먼트라 한다. 영문으로는 SL investment <u>Co.</u>, Ltd.라 한다.</p>
<p>(없음)</p>	<p>(신설) 제13조의2 (주식양도의 제한) ① 주식의 양도를 원하는 주주는 회사 이사회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주식의 양도를 원하는 주주는 양수인의 이름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주식양도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44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 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 며,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 <p>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 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	<p>(제44조에 제5항 및 제6항 신설) 제44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①~④ (좌동)</p>

<p>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없음)</p> <p>⑥ (없음)</p>	<p>⑤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.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 <p>⑥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 46 조 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③ (없음)</p>	<p>(제46조에 제3항 신설)</p> <p>제 46 조 (이익배당)</p> <p>①~② (변경 없음)</p> <p>③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
<p>(없음)</p>	<p>(신설)</p> <p>제 46 조의2 (중간배당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위 제1항에 명시된 중간배당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.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
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積立한 임의준비금 5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<p>④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본의 액 2. 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.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.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<p>⑤ 회사가 회계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위 제1항에 명시된 기준일 사이의 기간 동안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 포함),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
(없음)	<p>(신설)</p> <p>제48조 (주식의 소각)</p> <p>본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(다만,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하여야 함)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</p>
<p>부칙 제1조 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제1조 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